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Education for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김원규*
(Kim, Weon-gyu)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 III. 금융선진국의 금융교육
- IV. 금융소비자보호의 핵심 축으로서의 금융교육의 과제
- V. 결어

■ 국문 요약 ■

1980년대 금융자유화의 물결이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이 금융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대인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현상이며, 특히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가진 금융인에게마저 상처를 주는 오늘날의 금융사기 등 금융소비자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금융문외한인 일반인들에게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금융피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금융교육은 현재의 금융소비자인 사회인을 위한 금융교육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학교금융교육이 금융교육의 핵심축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체계는 아직은 과도기적인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금융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현재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 학교금융교육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우리나라도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완성을 비롯하여 특히 학교교육에서의 교육과정에 금융교

(투고일자: 2017. 11. 7, 심사개시일자: 2017. 11. 21, 게재확정일자: 2017. 12. 4).

* 이 논문은 2017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2017A062).

** 법학박사, 한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육을 필수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적 및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주제어 : 금융교육, 학교교육,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보호처, 금융감독원

I. 문제의 제기

지난 9월 18일(월) 제354회 국회(정기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동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동 법률안은 금년 봄 신록의 푸르름이 싱그러움을 더해갈 즈음에 차관회의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5월 23일 의안번호 2006989호로 정무위원회에 접수된 정부(안)으로서, 동 법률안의 내용 중 관심이 집중될만한 것은 동 ‘금융교육의 강화’를 위해 그동안 실무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금융교육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명실공히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제고를 통하여 상품선택권보장 등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의 틀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제34조와 제35조에 관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11월 2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된 바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도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그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실현과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교육협의회’를 금융위원회에 설치·운영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¹⁾ 즉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적고 있듯이, 이러한 지속적인 입법적 시도는 현재 실무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금융교육협의회의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꾀하고자 하는 정부금융당국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금융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반이 되는 정책으로서의 금융교육정책을 1980년대 이후부터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1) 김원규, “21세기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65호, 한국법학회, 101면.

이미 확립한 바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경제의 가장 큰 난제로 인식되고 있는 오늘날 그 기초가 되는 금융교육정책은 소비자보호정책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해 9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우리나라의 경제 및 금융교육의 방향 설정과 국제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의 성인 1,820명을 대상으로 OECD 산하 INFE²⁾가 마련한 설문지 및 조사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³⁾에 따라 실시한 ‘2016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6년도 우리나라의 금융이해력은 OECD 회원국 중 금융선진국인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및 일본이 빠진 16개국의 평균인 64.9점보다 약 1.3점 높은 66.2점으로서 비교대상 국 중 가장 낮은 폴란드(55.2점)보다는 11점이 높지만 가장 높은 프랑스(71점)보다는 4.8점이 낮은 결과로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⁴⁾ 만일, 이 조사에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금융선진국이 그 대상에 포함되었더라면 그 결과는 더욱 심각했으리라고 본다.

- 2)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경제-금융교육과 관련하여 국가 간 정보교환 및 국제표준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08년 5월에 설립된 OECD 산하의 금융교육국제협의기구.
- 3) OECD/INFE Toolkit To Measure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Inclusion: Guidance, Core Questionnaire and Supplementary Questions(INFE의 금융이해력 국제비교 가이드라인).
- 4) OECD 금융이해력 수준(2016년 기준) (점)

순위	국 가 명	금융이해력(66.7)	금융지식(71.4)	금융행위(66.7)	금융태도(60.0)
1	프랑스	71.0	70.1	74.4	63.6
2	핀란드	70.5	74.3	70.0	66.0
3	캐나다	69.5	70.1	68.9	70.0
4	노르웨이	69.5	74.3	64.4	72.0
5	뉴질랜드	68.6	71.4	63.3	74.0
6	벨기에	68.1	70.1	68.9	63.6
7	오스트리아	67.6	70.1	66.7	66.0
8	포르투갈	66.7	68.6	65.6	68.0
9	한국	66.2	70.1	64.4	63.6
16개 OECD 회원국 평균		64.9	69.1	61.3	65.6
10	네덜란드	63.8	70.1	57.8	66.0
11	에스토니아	63.8	75.7	54.4	63.6
12	라트비아	63.3	72.9	58.9	60.0
13	영국	62.4	60.0	62.2	66.0
14	체코	60.0	62.9	55.6	62.0
15	터키	59.5	65.7	53.3	62.0
16	헝가리	59.0	67.1	47.8	70.0
17	폴란드	55.2	62.9	48.9	56.0

* 주: () 내는 OECD INFE가 설정한 최소목표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OECD INFE, 'Int'l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 competencies 2016'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은 그동안 소비자 보호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사전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보다는 사후 조처적이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극히 소극적인 금융감독에 그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금융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는 물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교육정책이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사전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소비자보호정책으로서의 금융교육의 현상을 검토분석하고, 미국과 영국 등의 금융선진국의 금융교육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금융교육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1. 개 관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은 관 주도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완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고 부원장급의 처장을 임명함과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의 사전적 대응책으로서 금융교육을 주관하는 금융교육국을 두어 다양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교육국은 금융교육의 기획·운영과 금융교육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을 위해 산하에 금융교육기획팀, 일반금융교육팀, 청년금융교육팀, 학교금융교육팀을 두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교육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꾸준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금융교육정책을 입안·실행하고 있는데, 가령 2016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30대-40대(70.1점, 69.9점)가 가장 높은 점수(66.7점)를 보여 주고 있으나 그 밖의 연령대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연령대별 맞춤형교육 및 조기 금융교육을 통한 바른 가치관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⁵⁾

5) 2016년 금융이해력 점수 (점)

2.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특징

우리나라 금융교육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하는 관주도의 사전 예방적 금융교육시스템만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국을 중심으로 금융교육센터와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강국의 장점을 살려 경제·금융교육, 범 금융권에서 실시중인 체험관, 금융캠프 등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 금융교육 관련 사이트를 한 곳에 모아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금융교육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금융교육을 개설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자의 수준에 맞는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미래의 경제주체이며 금융소비자인 초·중·고생의 바른 금융지식과 건전한 소비습성을 체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초 금융교육으로서 1사 1교 금융교육⁶⁾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교육,⁷⁾ 일반 성인·군인·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금융교육이 실시되고 있다.⁸⁾ 특히 일반성인들에게는 금융이해력과 금융상품의 선택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각급 학교 방문교육,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체험금융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관주도의 교육의 이점을 적극 살려서 우수전문강사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강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이해력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전체		66.2	70.1	64.4	63.6
성 별	남자	66.3	72.2	63.6	62.8
	여자	66.0	68.0	65.3	64.3
연령별	29세 이하	62.0	69.4	57.6	59.6
	30대	69.9	74.6	70.1	63.0
	40대	69.9	74.1	69.9	63.9
	50대	67.6	71.5	65.8	65.3
	60대	64.2	65.0	62.5	66.1
	70대	54.4	52.1	50.5	64.8

* 자료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6)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과 초·중·고교 간에 결연관계를 맺고 해당 학교학생들에게 방문교육, 체험교육,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금융교육 시스템. 각종 비용은 주관기관이 부담.
- 7) 2015년 9월부터는 대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금융지식, 신용관리방법 등에 관한 특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양강좌 및 전공수업시간 활용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8) 육해공 3군 본부와 연계한 군인, 다문화가정, 주부, 북한이탈주민, 노인,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문제점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응책으로서의 금융교육을 관주도형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은 과도기적인 정책시행으로서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관주도의 금융교육을 실시하면서 가령 학교금융교육의 교육과정 편입 등 미래지향적 뒷받침과 동시에 민간에 의한 활발한 금융교육이 병행된다면 현재의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교육시스템을 과도기적 체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금융교육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체계나 예산편입 등 여러 면에서 지속가능한 교육이라고 보기는 곤란한 면이 적지 않고, 오히려 일시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교육체계임을 알 수 있다.

Ⅲ. 금융선진국의 금융교육

1. 개 관

2008년 8월 말 미국 발 금융위기는 금융선진국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2012년 6월 멕시코의 로스카보스(Los Cabos)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summit)에서 OECD 및 금융교육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가 합의한 OECD/INFE 금융교육을 위한 추가전략에 관한 원칙(high-level principles on consumer protection)을 승인하기에 이르렀음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바 있다.

사실 미국을 비롯한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훨씬 전인 2000년대 초부터 이미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그 결과를 입법화한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이 장에서는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및 오스트레일리아의 금융교육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시스템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한다.

2. 미국의 금융교육

(1) 금융교육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준비과정

미국은 금융자유화가 시작된 1980년대부터의 경험을 토대로 1990년대에는 금융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환경의 대 변혁이 있었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및 소비자단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나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비정부기구 등을 중심으로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국 연방의회는 2002년에 상원의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Senat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에서 금융교육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고,⁹⁾ 이를 계기로, 2003년에 ‘2003년 공정정확거래법(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의 내용에 포함된 ‘금융교육법(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Improvement Act)’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나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20 여개의 연방정부 기관에서 추천된 대표자로 구성되는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의 설립이나, 동 위원회의 사무국기능으로서의 금융교육실(Office of Financial Education)을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신설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¹⁰⁾

동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는 2006년 연방의회에 금융교육에 관한 국가전략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의 금융교육의 과제로서 금융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의 모색, 정부관계기관을 포함한 금융교육관련단체의 제휴강화의 필요성, 금융교육프로그램의 객관적인 효과측정방법의 개발 등을 지적하고 있다.¹¹⁾

한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소비자보호행정과 금융교육을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종래에는 금융교육에 관해서는 오직 통화발행이나 민간은행의 감독 등을 하는 12개 지구에 설치된 연방준비은행에 의한 교재제공이나 세미나 개최 등 개별적인 활동에 맡기고 있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02년 스스로 발표한 금융교육동향에 관한 논문에서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부족이나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제공에 있어서 환류(feedback)작업이 중요하다는 점, 소비자보호의 추진을

9) Senat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Hearing on ‘The state of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in America’, First Hearing in a Series”, 2002. 2. 5. <http://www.banking.senate.gov/02_02hr/020502/index.htm>

10)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 Act of 2003, P.L.No.108-159. Title V 117 Stat.2003-2010.

11)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Taking Ownership of the Future: The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 2006, 2006.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website. <<http://www.treasury.gov/about/organizational-structure/offices/Domestic-Finance/Documents/strategyeng.pdf>>

위해서는 한층 금융교육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¹²⁾ 그리고 이 논문을 계기로 연방준비제도가사회는 소비자보호행정뿐만 아니라 금융교육에 주력하게 되었다.¹³⁾

미국의 경우 2004년경부터 2006년에 걸쳐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비우량주택담부대출(sub-prime mortgage loan)이 급격하게 확대된 점에서 2007년 8월말에 미 행정부가 발표한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정책에서¹⁴⁾ ‘금융이해력에 관한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언급하였으며,¹⁵⁾ 2008년 1월에는 이를 받아들여 자문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동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에는 ‘금융교육을 연방정부의 정책으로서 추진한다.’고 명기되어 있다.¹⁶⁾ 동 자문위원회 위원은 그 대부분을 금융교육에 종사하는 비정부기구(Non Profit Organization)의 대표자 등 민간 전문가가 차지하고 있어, 연방정부기관 출신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던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

대통령에게 제출된 2008년의 동 자문위원회 연차보고서에서는 동 위원회활동으로서 사회인 대상으로는 미국 최초인 금융이해력에 관한 전국조사나 적절한 비우량주택담부대출의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책정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이해도 테스트의 실시와 우수자 표창 등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¹⁷⁾ 또한 동 연차보고서는 금융교육관계자에 대한 제언에 그치지 않고 연방의회 및 주 의회에 대하여 입법적 조치를 권고함과 동시에 정부관계기관의 행동을 촉구하는 제언도 하고 있다. 그 제언에는 의무교육과정의 전 학년에 대한 금융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우대조치,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연구하는 활동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지출 등의 구체적인 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2010년 1월 미 행정부는 ‘금융이해력에 관한 대통령자문위원회’를 ‘금융능력에 관한 대통령자문위원회(The President`s 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12) Sandra Braunstein and Carolyn Welch, “Financial Literacy: An Overview of Practice, Research, and Policy”, Federal Reserve Bulletin, 2002.11.

13) 김원규, 앞의 논문(주 1), 111면.

14) “Fact Sheet: New Steps to Help Homeowners Avoid Foreclosure”, 2007. 8. 31. WHITE HOUSE(PRESIDENT George W. Bush) Website <<https://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7/08/20070831-4.html>>

15) The President`s 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

16) “Executive Order 13455—Establishing the President`s 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 Federal Register, 73(16), 2008.1.24., pp.4445—4447. <<https://www.gpo.gov/fdsys/pkg/FR-2008-01-24/pdf/08-325.pdf>>

17) President`s 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 “2008 Annual Report to the President”, 2009.1.6.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Website.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financial-education/Documents/PACFL-ANNUAL-REPORT-1-16-09.pdf>>

Capability)’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여기서 금융능력이란 개인에 의한 단순한 금융지식의 획득이라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 스스로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를 접하여 적절한 금융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정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사용된다.¹⁸⁾ 즉, 미국 금융교육을 둘러싼 대통령자문위원회의 명칭에서는 금융지식에 기초한 금융행동의 실행의 중요성이 읽혀진다.

또한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4년의 최우선과제로서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에 대한 금융교육의 강화를 들어 2013년에 젊은 층 대상의 ‘조기출발에 의한 금융의 성공(Starting Early for Financial Success)’이라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와 같이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문제를 계기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일단 강하게 인식되게 되었으나, 그것은 그때까지의 불충분한 금융교육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동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¹⁹⁾ 그리고 미국의 금융교육에서의 중요한 과제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한가에 달려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Ben S. Bernanke)은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젊은이는 물론 노인에 이르는 거의 전 국민이 금융경제기초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2013년 어느 강연 중에서 설한 바 있다.²⁰⁾

(2) 미국의 학교금융교육

미국의 학교교육은 주(州) 정부나 그 하부조직인 지방교육행정구획상의 학구를 중심으로 정규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인 금융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지역네트워크의 형성과 그 활용에 철저하다.

과거 미국에서는 교육과정에 금융교육내용이 단독교과로 존재하지 않고 수학이나 작문 등의 주요과목 중에 예제 등의 형태로 담겨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개혁이 진행되면서 주요 과목이 기본문제를 중심으로 개편되어 금융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은 축소되기도 하였다.²¹⁾ 이러한 환경변

18) 金融經濟教育研究會報告書, 2013. 4. 30. p. 4. 金融廳 Website.

<<https://www.fsa.go.jp/news/24/sonota/20130430-5/01.pdf>>

19) 김원규, “21세기 금융위기와 중소기업 금융지원법제의 과제”, 『법학연구』, 40호, 한국법학회, 288면.

20) 浅野忠克, “高まる金融教育の重要性—国家が取り組むべき課題に,” 『エコノミスト』 4310号, 2013, 82~83면; Ben S. Bernanke, “Financial and Economic Education,” (At the 13th Annual Redefining Investment Strategy Education (RISE) Forum, Dayton, Ohio) 2013. 4. 4.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Website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speech/20130404a.htm>>

화에 대하여 금융교육관계자는 관과 민간 쌍방의 약 150 여개의 주요 단체에 의한 공동출자로 1995년에 점프스타트개인금융교육연맹(Jump S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nancial Literacy)이라는 새로운 비정부기구를 결성하는 등 금융교육을 위한 노력을 계속 했다. 2001년에는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교육개혁법(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이 제정되어,²²⁾ 그 중에서 금융경제교육이 27개의 특별장려분야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또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금융경제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교육협의회(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는 2001년에 아동학생용워크북, 교사용지도서, 가정용지도서를 하나로 통합한 형태로 ‘생활을 위한 금융건강(Financial Fitness for Life)’이 출판되었고, 또한 2013년에는 각 급 학교 단계에서 몸에 익혀야 하는 개인금융(Personal Finance) 의 지식과, 그 지식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독자적으로 작성하고 있다.²³⁾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학교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응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은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금융교육을 제도화하고 있는 주(州)는 2013년 시점에서 전미 50주의 약 50%에 불과하다.

3. 영국의 금융교육

(1) 금융교육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영국에서는 1980년대에 시행한 공적연금 규모의 축소 및 사적연금에의 이행장려책 아래에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그 설명이 불충분한 채로 사적연금의 권유나 판매를 행하는 경쟁이 격화되었다.²⁴⁾ 결국 이러한 행태는 사회문제로 발전하였고, 소비자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은 크게 흔들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그 외의 금융 분쟁도 빈발하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대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게 되었다.²⁵⁾

영국의 경우 1997년에는 금융규제감독체제에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다. 즉 종래

21) Maris A. Vinovskis, “The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The Road to Charlottesville: The 1989 Education Summit,” 1999. 9. <<https://govinfo.library.unt.edu/negp/reports/negp30.pdf>>

22)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P.L.No.107-110,115 STAT.1425-2094.

23)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Website<<https://councilforeconed.org/>>

24) 김원규, “21C 세계금융위기의 원인과 자본시장법의 과제”, 『경영법률』, 19권 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4면.

25) 大橋善晃, “イギリスの金融教育最新事情,” 個人金融 6卷 4号, 2012, 12~21面.

의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1986)’을 대신하는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이 제정되어, 금융감독권이 1997년에 신설된 금융서비스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으로 일원화되었다. 동법에서는 금융서비스청의 4개의 법적 책무 중 하나로서 금융교육의 보급촉진이 명문화되었다.²⁶⁾

이어서 금융서비스청은 1998년에 금융교육활동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정했는데,²⁷⁾ 그 중에서 소비자로의 금융이해력교육²⁸⁾이나 소비자로의 정보제공 및 조언이 중요한 과제로서 채택되었다. 또한 당면과제로서는 금융교육을 학교교육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장기적 과제로는 금융교육프로그램 책정에 필요한 기초조사(Baseline Survey)의 실시나 금융교육프로그램의 효과측정 등을 검토하게 되었다.

당시 영국 행정부의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는 새로운 공립학교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²⁹⁾의 하나로서 2000년에 ‘개인금융교육에 의한 금융능력 학교를 위한 지침(Financial Capability through Personal Financial Education Guidance for Schools)’을 발표했다.³⁰⁾ 이에 따르면 금융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생활기술의 하나로 보고 있다. 2003년에는 성인의 금융능력이 발전해 나갈 단계를 나타낸 성인금융능력체계(Adult Financial Capability Framework)가 작성되었다.³¹⁾

2002년 금융서비스청은 금융교육의 국가전략책정제언이나 감독을 목적으로 한 국민 전문가로 구성되는 금융능력향상그룹(Financial Capability Steering Group)을 발족시켰다. 2003년에 금융서비스청에서 발표한 보고서 ‘금융능력을 위한 국가전략(towards a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에서는 그때까지 지식의 제공을 주축으로 한 금융이해력교육을 통하여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고, 국민이 직면하는 금융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³²⁾ 영국정부는

26) 김원규, “21C 세계금융위기의 원인과 자본시장법의 과제”, 202면.

27) The FSA consults on consumer education strategy, 1998. 1. 1. FSA Website <<https://www.fsa.gov.uk/library/policy/cp/1998/15.shtml>>

28)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금전관리에 관하여 적절한 판단이나 효율적인 결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몸에 지니게 하는 교육.

29) 영국의 5세부터 16세까지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30)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Financial Capability through Personal Financial Education Guidance for Schools at Key Stages 1 & 2”, 2000. 7. Values, Money & Me Website <<https://www.valuesmoneyandme.co.uk/downloads/financial-capability-guidance.pdf>>

31) Basic SKILLS Agency, Adult Financial Capability Framework. Learning and Skills Observatory Wales Website <<https://www.learningobservatory.com/uploads/publications/603.pdf>>

32)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Towards a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 2003. 11. <<https://www.fsa.gov.uk/pubs/other/fanancial-capability.pdf>>

동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개인의 자립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능력을 기본개념으로 자리매김한 국가전략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대응을 시작했다. 2004년에 금융서비스청이 발표한 보고서 ‘영국 금융능력의 구조(Building financial capability in the UK)’는 학교, 청년(16~25세), 근로현장, 어린이가 태어나는 가족, 차입, 퇴직, 조연의 7개의 주제에 따라 금융교육의 추진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³³⁾

2005년에 기초조사가 실시되었고, 2006년에는 그 결과가 공표되었다.³⁴⁾ 이 조사를 통하여 판명된 것은 소득계층을 따지지 않고 다수의 소비자가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노후나 실업에 대비하여 저축하지 않고, 금융거래에 필요한 판단능력이 미흡하고, 특히 18~40세 연령층에 의한 이해도가 40세 이상의 연령층에 의한 이해도에 비하여 명확하게 열세라는 점, 잠재적으로 과중채무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세대가 200만~300만 세대를 상회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금융서비스청은 같은 해에 실제의 행동과 결과를 중시하는 금융교육의 국가전략목표를 설정했다.³⁵⁾ 이것은 7개의 주제로 구성된 구체적인 프로젝트(5개년계획)로서 공표되었다.³⁶⁾ 2007년 영국 정부는 재무부(HM Treasury)를 중심으로 금융서비스청 주도의 국가전략에 따른 금융교육의 촉진이나 대상이 되는 소비자 확대를 목표로 국민의 금융능력향상을 위한 장기계획을 발표했다.³⁷⁾ 미국발 금융위기 후인 2008년에는 재무부와 금융소비자청이 공동으로 소비자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평한 조언이나 학교금융교육촉진에 관한 행동계획을 작성했다.³⁸⁾

영국도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재편이나 소비자보호가 시도되었다. 2009년 7월 재무성의 시장개혁법(안) 중에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감 상실문제가 다루어졌는데, 그 대응책의 하나로써 금융교육의 강화가 포함되었다.³⁹⁾ 2010년 4월에는 ‘2010년 금융서

33)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Building financial capability in the UK”, 2004.
<<https://www.fsa.gov.uk/pubs/other/fanancial-capability.-uk.pdf>>

34)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inancial Capability in the UK: Establishing a Baseline”, 2006. 3.
<<https://www.fsa.gov.uk/pubs/other/fancap-baseline.pdf>>

35)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inancial Capability in the UK: Delivering Change”, 2006. 3.
<<https://www.fsa.gov.uk/pubs/other/fancap-delivering.pdf>>

36) 학교, 청년, 근로현장, 소비자커뮤니케이션, 온라인도구(tool), 신희가정, 매니아 장치(Mania device).

37) HM Treasury, Financial Capability: the Governments’ long-term approach, 2007. Digital Education Resource Archive Website. <<https://dera.ioe.ac.uk/7551/1/fincap-150107.pdf>>

38) HM Treasury,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8-09, HC 611, 2009, p.64. GOV.UK Website.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50509/0611.pdf>

39) HM Treasury, Reforming financial markets, CM7667, 2009. GOV.UK Website.

비스법'규정을 근거로 금융서비스법의 금융교육부문이 분리·독립되는 형태로 소비자금융교육기관⁴⁰⁾이 설립되었다.⁴¹⁾

이를 계기로 영국 금융교육은 그때까지 금융서비스법이 목표로 해온 '교육과 정보를 널리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접근방법을 '조언과 행동을 중시'하는 접근법으로 이동하게 되었다.⁴²⁾ 2011년 4월 소비자금융교육기관은 금융조언서비스(Money Advice Service; MAS)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금융조언서비스는 온라인, 전화, 대면 또는 인쇄물을 매개로 자산 및 부채의 양면에서 금융조언을 하고, 특히 온라인에 의한 조언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조언서비스는 개별금융상품의 추천 및 장려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조언은 하지 않고 조언의 내용을 일반적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로서는 그러한 구별은 곤란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보인다.⁴³⁾

금융조언서비스는 2013년에 제2회 기초조사(baseline survey)를 실시했고, 동 결과보고서에서는 2005년에 실시한 제1회 조사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금전의 변동, 금전관리에 힘쓰는 한편, 전체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관한 이해를 못하고, 저축이나 소득의 실질적인 가치를 손상 받고 있는 점 등을 보여 준다. 또한 이 조사 결과를 발판으로 정부, 제3분야, 업계, 교육관계자, 조언자, 그리고 개인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조사결과와 함께 소비자는 금융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만 있다면 항상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적 요인이나 이를 받아들인 자기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해 행동이 크게 영향받는다라는 행동경제학적인 식견의 중요성도 지적되고 있다.⁴⁴⁾

또한 영국 중앙은행인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은 학생, 사회인을 위한 금융교육활동에 대하여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한 영국은행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설명이나 물가안정의 중요성 등 경제문제에 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한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38578/7667.pdf

40) 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

41) Financial Service Act 2010(c.28)

42) 大橋善晃, "英国における金融教育MASによる第二次ベースライン・サーベイの実施," 「証券レビュー」 55卷 7号, 2015, 97~120面.

43) 田中健太郎, "英国における公的金融教育機関を巡る議論," 「野村資本市場クォーターリー」 17卷 3号, 2014. 冬, 26~31面.

44) Money Advice Service, The Financial Capability in the UK, 2013. Autorite des marches financiers Website.

https://www.lautorite.qc.ca/files/pdf/education-financiere/the_financialcapabilityuk.pdf

이와 같이 영국은 이미 80년대부터 금융빅뱅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응의 하나로서 금융교육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2) 영국의 학교금융교육

영국의 학교교육에 관하여는 '1988년 교육개혁법'에 의해, 2000년도부터 한국의 학습지도요령에 해당하는 공립학교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이 도입되었다. 동 교육과정에는 초중학생을 위한 학습단계마다 도달해야 하는 금융교육 목표나 종합학습과목, 공민, 수학 등 기존 교과목의 학습교육과의 관계를 정리한 금융교육의 가이드북을 발행하는 등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8년도에 중학생을 위한 공립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종합학습교과목이 '개인의 경제활동과 금융판단능력의 육성' 과 '개인의 생활능력의 양성'의 2 분야로 재편됨으로써 종합학습교과목에서 금융교육의 위상이 높아졌다. 현재 중학생단계에서의 공립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금융을 포함한 경제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있는 교과인 시민권(citizenship)과 필수 교과목은 아니지만 교육영역으로서 금융교육도 포함한 '개인, 사회, 건강 및 경제교육'⁴⁵⁾의 양자가 모두 실시되고 있다. 그 밖에, 수학 중에도 금융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⁴⁶⁾

영국의 경우 관민제휴체제 하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지원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힘이 되는 것은 지역마다 다른 교육현장 실정에 밝은 개인금융교육단체(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로 대표되는 비정부기구인데, 영국 정부는 이러한 비정부기구와의 긴밀한 제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⁴⁷⁾ 또한 재무부는 2005년에 금융교육의 일환으로서 세제우대조치를 동반하는 자녀명의 투자 및 저축제도를 도입하는 등 학생들의 금융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⁴⁸⁾

45) personal, social, health, economic education

46) Department for Education,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Framework document, 2014. GOV.UK. Website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35116/Master-final-national-curriculum-220714.pdf>

47) 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 Website <<https://www.pfeg.org/>>

48) Child Trust Fund. 동 제도를 학교금융교육교재로 이용함으로써 복수의 금융교육효과가 기대된다는 평을 받고 있다.

4. 오스트레일리아

(1) 금융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과정

1980년대에 시작된 금융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금융상품의 복잡화가 진행되어 소비자 자신의 금융이해력에 의거한 자산형성이 필요한데 이어, 2000년대 초기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의 지나친 사용에 의한 젊은 층의 부채문제의 심각화를 계기로, 정책과제로서 금융이해력이 그 해결방안으로 대두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2004년 2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및 금융이해력에 관한 국가전략을 처음으로 책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비자 및 금융이해력 TF(consumer financial literacy task force)를 구성하고, 2005년 6월에는 동 TF의 제언에 따라서 금융이해력기관(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을 재무부(treasury) 산하에 설치했다.⁴⁹⁾

2008년 여름 미국 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금융이해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한층 고조되어 정책추진 중심이 재무부에서 금융감독기관인 오스트레일리아 증권투자위원회로 이관되었고, 국가전략에 관하여도 동 위원회는 2011년 3월에 국가금융이해력전략(national financial literacy strategy)을 채택하였다.⁵⁰⁾ 그 중에는 전략 목표로서 ‘금융이해력 수준개선보다 오스트레일리아국민의 금융 면에서의 행복을 개선하는 것’이 언급되고 있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지금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및 주(州) 정부의 관계부처, 금융기관, 지역사회(community) 등이 각각 제공하고 있는 금융교육에 관하여 국가전략에 따른 제휴를 확보하는 데 있다.

동 위원회는 그 밖에도 2008년에 오스트레일리아정부 및 위 증권투자위원회에 대하여 금융이해력 향상에 관한 제언을 하였으며, 그 후 소비자, 금융이해력, TF를 전신으로 하는 금융이해력이사회(Financial Literacy Board)가 재무부에 설치되어, 금융관계자, 교육관계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금융카운셀러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오스트레일리아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응책으로서 다른 금융선진국의 경우와 다를 바 없는 금융교육시스템의 구축으로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49) 野村亜紀子, “オーストラリアの国家金融リテラシー戦略—鍵を握る学校教育への組み込み—,” 「野村資本市場クォーター」 17卷 3号, 2014. 冬5~25面.

50)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National Financial Literacy Strategy,” REPORT 229, 2011. 3. <<https://www.financialliteracy.gov.au/media/218312/national-financial-literacy-strategy.pdf>>

(2) 오스트레일리아의 학교금융교육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는 금융행정에의 대응과 병행하여 교육행정면에서 금융이해력을 대응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관할권은 주정부에 있으며 교육과정도 주단위로 결정된다.

2005년 오스트레일리아정부 및 8개 주(州) 정부 등의 장관으로 구성되는 교육, 고용, 연수, 청년문제에 관한 장관협의회(Ministerial 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s) 하에 설치된 워킹그룹에 의해 ‘전국소비자, 금융이해력 프레임워크(National Consumer and Financial Literacy Framework)’가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복수의 교과목의 일부에 금융이해력을 대응할 것을 정하고 있다.⁵¹⁾

2008년 12월에는 21세기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교육의 방향성을 나타낸 ‘오스트레일리아 청년을 위한 교육목표에 관한 멜버른선언(Melbourne Declaration on Educational Goals for Young Australians)’이 채택되었다. 여기서는 ‘모든 오스트레일리아 청년들이 학습성공자, 자신을 충족하는 창조적 개인, 활동적이고 지식 있는 시민이 될 것’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소비자교육과 금융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다한다고 선언한다.⁵²⁾

멜버른선언으로 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통일적인 교육커리큘럼을 설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큰 지지를 받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주(州) 정부의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커리큘럼설정기구(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가 오스트레일리아 커리큘럼(Australian Curriculum)을 채택했다.⁵³⁾ 이 커리큘럼에는 경제와 경영과목이 있으며 이 과목에 금융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⁵⁴⁾ 교원을 위한 교재제공에는 앞에서 본 오스트레일리아 증권투자위원회에 의한 ‘Money Smart Teaching’ 프로그램이 있다.⁵⁵⁾

51) Education Services Australia Website

<<https://www.curriculum.edu.au/verve/-resources/National-Consumer-Financial-Literacy-Framework-FINAL.pdf>>

52) Ministerial 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s, “Melbourne Declaration on Educational Goals for Young Australians”, 2008.12. Education Services Australia Website

<<https://www.curriculum.edu.au/verve/-resources/National-Declaration-on-the-Educational-Goals-for-Young-Australians.pdf>>

53) Australian Curriculum Website <<https://v7-5.australiancurriculum.edu.au>>

54) “Economics and Business (Available for use: awaiting final endorsement),” Australian Curriculum Website <<https://www.australiancurriculum.edu.au/humanities-and-social/economics-and-business/curriculum/f-10?layout+1>>

이와 같이 오스트레일리아는 학교금융교육이 아직은 미완이지만 이를 완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IV. 금융소비자보호의 핵심 축으로서의 금융교육의 과제

1. 금융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대응방향

제354회 정기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금융교육의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이 법을 통하여 일관되게 추진 가능한 기반 마련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바, 정부는 지금도 금융교육협의회 등 금융교육을 주관하는 기구의 근거를 입법적으로 확고히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금융교육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내비친 금융교육의 의지는 금융시스템 구축의 초기단계 불과한 기존의 금융교육기구의 근거규정마련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마련 등 금융교육 장기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국회의 꾸준한 입법추진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는 금융소비자보호의 근본적인 대응책으로서의 금융교육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금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금융교육시스템구축을 위해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논의와 입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은 앞에서 말한 바 있다.

향후 국회는 지금까지의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의 처리와 같은 소극적인 노력을 넘어 금융소비자보호의 근본적인 대응책으로서의 금융교육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의원들의 법률안 제안과 이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55)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s Money Smart Website
<<https://www.moneysmart.gov.au/>>

것이다.

3. 민간금융기관의 금융교육계몽

민간 금융기관은 지금도 꾸준히 금융교육 계몽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자사와 거래하는 소비자가 그 대상이지만,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청소년 등 미래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금융교육계몽에 비교적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향후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금융교육 계몽활동은 학교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교육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4. 교육기관을 통한 금융교육

미국의 2008년 금융이해력에 관한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연차보고서를 통한 제안 가운데 ‘의무교육과정의 전 학년에 대한 금융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우대조치’와 2013년의 ‘각 급 학교 단계에서 몸에 익혀야 하는 개인금융의 지식’의 제시, 영국 교육고용부의 2000년도의 공립학교 교육과정 등의 ‘개인금융교육에 의한 금융능력 지킴’, 오스트레일리아의 2008년 청년을 위한 교육목표에 관한 멜버른선언의 영향을 받은 ‘오스트레일리안 커리큘럼’ 등 교육기관을 통한 금융교육의 추진은, 교육기관에 의한 금융교육에 적극적이지 못한 현재의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시스템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5.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금융교육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대응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에 관한 이해를 더하고 각 금융 분야에서 자신의 의사결정 하에서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면에서 미국, 영국 및 오스트레일리아의 금융교육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적인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금융자유화의 거센 풍랑을 겪은 금융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바, 이는 금융교육을 금융소비자 보호의 최종적인 대응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준비단계를 거쳐 금융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국가전략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교육시스템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더욱 치밀하고 강화된 대응을 하고 있음을 살펴 본 바, 우리나라의 금융교육도 기본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 내지는 금융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치밀하고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⁵⁶⁾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적인 대응책으로서의 금융교육의 핵심 축은 미래의 금융소비자인 현재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교육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도 위 금융선진국의 사례에서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금융교육도 현재의 관주도의 금융교육시스템을 과도기적 금융교육체제로 보고 향후 본격적인 학교금융교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단계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V. 결 어

1980년대가 열리면서 금융자유화의 물결이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이 금융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대인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현상이며, 특히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가진 금융인에게마저 상처를 주는 오늘날의 금융사기 등 금융소비자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금융문외한인 일반인들에게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금융피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금융교육은 현재의 금융소비자인 사회인을 위한 금융교육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학교금융교육이 금융교육의 핵심축이 되어야 한다.

56) 김원규, 앞의 글(주 1), 113면.

오늘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적 대응책으로서의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재인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은 관주도의 형식적 제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1년 프랑스 칸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금융소비자 보호의 상위원칙’에 기초한 금융교육에 관한 국가전략은 금융선진국에서는 이미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국가에서는 설정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건대 금융교육에 관한 국가전략은 정부가 정하고 이에 솔선하여 대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간금융기관 등에 의한 대응도 중요하다. 특히 정부의 전략에는 미래 금융소비자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금융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은 앞에서 본 금융선진국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정부의 대응전략은 금융교육과 관련된 부처가 서로 협력관계를 통하여서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처 등 관계 부처 간의 횡단적인 제휴와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금융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서만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융교육은 향후 한층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분야로서 그 과제도 산적되어 있다. 그것만으로도 어떠한 형태로 이를 진행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국회를 포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체계는 아직은 과도기적인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금융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현재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핵심에 학교금융교육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완성을 비롯하여 특히 학교교육에서의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필수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적 및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원규, “21세기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7권 1호, 한국법학회, 2017. 3.
- 김원규, “21세기 금융위기와 중소기업 금융지원법제의 과제”, 「법학연구」, 40호, 한국법학회, 2010. 11.
- 김원규, “21C 세계금융위기의 원인과 자본시장법의 과제”, 「경영법률」, 19권 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4.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OECD INFE, 'International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 competencies 2016'
- 大橋善晃, “英国における金融教育MASによる第二次ベースライン・サーベイの実施”, 「証券レビュー」, 55卷 7号, 2015.
- 田中健太郎, “英国における公的金融教育機関を巡る議論”, 「野村資本市場クォーターリー」 17卷3号, 2014. 冬.
- 野村亜紀子, “オーストラリアの国家金融リテラシー戦略一鍵を握る学校教育への組み込み”, 「野村資本市場クォーターリー」 17卷 3号, 2014. 冬.
- 金融經濟教育研究會報告書, 2013.4.30.p.4.金融廳Website. <<https://www.fsa.go.jp/news/24/sonota/20130430-5/01.pdf>>
- 浅野忠克, “高まる金融教育の重要性一国家が取り組むべき課題に”, 「エコノミスト」 4310号, 2013.
- 大橋善晃, “イギリスの金融教育最新事情”, 「個人金融」 6卷 4号, 2012.
-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National Financial Literacy Strategy”, REPORT 229, 2011.3. <<https://www.financialliteracy.gov.au/media/218312/national-financial-literacy-strategy.pdf>>
- Ben S. Bernanke, “Financial and Economic Education,” (At the 13th Annual Redefining Investment Strategy Education(RISE) Forum, Dayton, Ohio) 2013. 4. 4.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Website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speech/20130404a.htm>>
- Department for Education,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Framework document, 2014. GOV.UK. Website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35116/Master-final-national-curriculum-220714.pdf>
- “Executive Order 13455—Establishing the President’s 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 Federal Register, 73(16), 2008. 1. 24., pp. 4445~4447. <<https://www.gpo.gov/>>

fdsys/pkg/FR- 2008-01-24/pdf/08-325.pdf>

HM Treasury,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8-09, HC611, 2009, p.64. GOV.UK Website.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50509/0611.pdf>

Money Advice Service, The Financial Capability in the UK, 2013. Autorite des marches financiers Website. <https://www.lautorite.qc.ca/files/pdf/education-financiere/the_financialcapabilityuk.pdf>

OECD/INFE Toolkit To Measure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Inclusion: Guidance, Core Questionnaire and Supplementary Questions.

President's 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 "2008 Annual Report to the President", 2009. 1. 6.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Website.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financial-education/Documents/PACFL-ANNUAL-REPORT-1-16-09.pdf>>

Abstract

A Study on the Financial Education for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Kim, Weon-gyu*

The wave of financial liberalization has greatly influenced Korea. Since modern life is closely related to financial life, financial consumers will also be affected by financial liberalization. In particular, financial fraud could hurt financial experts with professional financial knowledge. Illegal behavior threatening financial consumers is not just a threat to the general public, but it is a real financial problem. Financial education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s topics of crucial importance now. Financial education is also important for financial education for the current financial consumers.

In the long run, however, school finance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Although the nation's financial education system is now in preparation for the transition, the advanced economies of finance, such as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Australia have already undergone meticulous preparations since the early 2000s. Currently, financial institutions are building a systematic financial education system, and at the cor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there is a school finance education. The nation should continue to strive for financial education, especially in schools education courses, including laws on pendi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Key Words: finance education,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financial literacy, financial capability, financial services act, national curriculum

* Professor at Hannam University, Ph.D

*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17 Hannam University Research Fund (2017 A 062).